광명시 시정발전추진단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6. 15 훈령 제316호
일부개정 2013. 8. 1 훈령 제329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4. 8. 14 훈령 제338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의 주요 역점시책 및 특별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직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불식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자 광명시 시정발전추진단·광명시 시정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광명시 시정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의 주요 역점시책·현안사업 및 시장이 지정한 특별과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수립·추진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② “광명시 시정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란 무사안일 주의와 복지부동 등의 행태로 공직사회와 조직발전에 저해되는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평가결과 “광명시 시정봉사단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 선정된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을 관리하고 임무부여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소속) ① 추진단은 행정재정국 총무과 소속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와 대상사업 및 특별과제에 따라 소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 2014. 8. 14〉

② 봉사단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13. 8. 1, 2014. 8. 14〉

제4조(대상사업 등)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앙 또는 경기도에서 이양되는 사무의 시행초기 사업
2.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3. 그 밖에 주요 역점시책·현안사업 및 특별과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구성) ① 시장은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해당사업과 관련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인원은 대상사업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단원 중에서 그 임무를 총괄할 수 있는 역량있는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추진단에 속하지 아니한 공무원도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봉사단의 구성은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하되, 단장은 대상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중에서 시장이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상사업의 법률적·지역적 타당성 검토와 사업추진의 지원
2. 인·허가 사업의 법률적·환경적 적합여부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인·허가 여부 결정
3. 대상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강구
4. 대상사업의 준공 전 사전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강구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한 특별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봉사단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봉사활동·현장업무 지원
2. 자기성찰을 위한 프로그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프로그램

제7조(운영) 추진단 및 봉사단의 운영은 해당사업 등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책임과 권한) 추진단은 대상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구성원 모두가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9조(인센티브 등) ① 추진단원 중 업무추진실적이 현저하고 탁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추진단 및 봉사단 운영기간 동안 임무수행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에는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추진단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추진단·봉사단 세부계획 등) 시장은 추진단·봉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훈령 제329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시정발전추진단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14. 8. 14 훈령 제338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시정발전추진단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